

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

새누리의 진단

-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액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(건강보험 보장율이 OECD 30개국 중 27위)
- 특히 중증질환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심각

새누리의 약속

- 4대 중증질환(암, 심장, 뇌혈관, 희귀난치성질환)에 대해 총 진료비(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)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

새누리의 실천

- 현재 75%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(비급여부문 포함)을 (2013년 85%, 2014년 90%, 2015년 95%, 2016년 100%)로 확대

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

새누리의 진단

-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대상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, 중위계층은 300만원,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, 초과 본인부담 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운영 중
- 그러나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 납부로 불만 제기

새누리의 약속

-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
 -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, 100만원, 150만원, 200만원, 250만원, 300만원, 350만원, 400만원, 450만원,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
- 제도 도입 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

새누리의 실천

-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 방안 수립(2013년)
 -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심의 의결 추진
- 「건강보험법시행령」 개정 추진

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

새누리의 진단

-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방식에 차이가 있어 직장에서 지역으로 혹은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가입자 불만 발생
- 특히 직장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이동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1년의 유예기간(임의계속 가입기간)을 두어 낮은 보험료인 직장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 제기

새누리의 약속

-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,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

새누리의 실천

- 「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」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 개정(2013년)

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

새누리의 진단

-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며, 이 때문에 노인 대부분이 진료비 부담 어려움 호소
- 임플란트가 보편화 되어 치과진료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, 인공치아 1개당 100만~300여만원에 달하는 고비용 진료 구조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

새누리의 약속

-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,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,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

새누리의 실천

-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(75세 이상 2012년 완전틀니, 2013년 부분틀니)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방안 수립(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)
 -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(2013년)
-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(2014년 이후)

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‘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’ 설립

새누리의 진단

- 간병에 따른 높은 비용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비용부담 과다

새누리의 약속

- ‘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’을 설립하여 독거노인돌봄,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하고,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

새누리의 실천

- ‘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’ 제도 법제화

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

새누리의 진단

- 현재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는 5.8%인 31만 7천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(독일은 제도 도입 당시 8.0%, 일본은 제도 도입 당시 11.6%)
- 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인지기능보다는 신체적 불편(세수하기, 양치질하기 등)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 중증치매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

새누리의 약속

-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

새누리의 실천

- 장기요양의 현행 1~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~5등급의 조정,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(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)
- 「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」 개정(2013년)
- 2014년 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

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

새누리의 진단

-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등은 부양의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필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등급판정 점수가 낮을 경우 등급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

새누리의 약속

-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,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

새누리의 실천

-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제로 개편하고,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 심의(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)
- 「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」 개정(2013년)
-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추진